

[별표 1]

소방장비 유지관리 체계(제4조 관련)

구 분	기본관리(현장 대원 수행)	전문관리 (전문기관 수행)
공통사항	- 현장에서 대원이 수행하는 관리로 장비의 검사, 보관, 세척, 외관 점검과 작동기능 확인 등의 관리 -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소모품 교체, 오일류 보충 등 소규모 점검·정비 -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사항의 점검	- 기본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검사, 점검·정비 등에 대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자격자가 수행하는 관리 - 제조사 또는 제조사 지정 서비스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부품 교체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검사·점검·수리 -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제조사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 가능한 점검항목
소방자동차	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26조에 따른 일일 및 주간 점검 - 소방사다리차(고가·굴절), 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 및 그 밖의 소방차 - 전조등, 필터류, 오일류 등 자가(自家) 정비가 가능한 소모품의 교환 등	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리 기준으로서 기본관리 외의 사항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밀점검, 특별점검 등 - 특장 제조사만 가능한 점검·정비
개인보호장비	「소방장비관리법」에 따른 점검 - 외관·기능, 위생 상태의 점검 -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자가(自家) 점검, 공기호흡기와 헬멧 등의 소모품 교체 등 소규모 정비	- 부품 등의 교체를 위한 해체·분리 등 기술이 필요한 정비 -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부품(소모품) 교체 등의 정비
측정용 장비	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전원부, 계기관, 측정 결과의 일관성 등을 위한 점검 및 각종 필터류의 교체	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검·교정

<비 고>

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